

#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홍순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81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5월 25일

발 의 자 : 장홍순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동율 · 유광상 · 허기회  
유 용 · 맹진영 · 박운기  
이병해 · 김정태 · 김진철  
김경자(강서) · 진두생 의원  
(11명)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에서 역사적·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장소를 보존·관리할 필요 있음.

## 2. 주요골자

시장이 시 관내의 역사적·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장소를 보존·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7조의2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

(1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영상물 제작장소의 보존 등) 시장은 시 관내의 역사적·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장소를 보존·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7조의2(영상물 제작장소의 보존 등) 시장은 시 관내의 역사적·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장소를 보존·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##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2(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)에 따라 비용 발생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#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

나. 추계결과 ≙ 965,361천원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연평균 193,072천원임

- 추계의 전제

- 비용은 2018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서울시 영상물 제작소 1개소 설치 전제
- 설치비는 1회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≙ 965,361천원

- 총비용 =  $\sum_{i=1}^5$ (연간 영상물 제작 장소 보존 관리비)<sub>i</sub>

*i* = 비용추계 연차(2018년~2022년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18)	2차년도 (2019)	3차년도 (2020)	4차년도 (2021)	5차년도 (2022)	합계
	세입	-	-	-	-	-	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영상물 제작 장소 보존 관리비 (제7조의2)	300,933	166,107	166,107	166,107	166,107	965,361
	소계(b)	300,933	166,107	166,107	166,107	166,107	965,361
□ 총 비용(b-a)		300,933	166,107	166,107	166,107	166,107	965,361

